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인에 대한 검토보고

200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 현황

(단위: 천원)

부서별	기 금 명	수 입			지 출		
		2000 년도	2001 년도	증(△)감	2000 년도	20001 년도	증(△)감
총 계		3,627,936	4,348,636	720,700	3,627,936	4,348,636	720,700
문 화 체육과	체육진흥 기 금	932,824	1,161,967	229,143	932,824	1,161,967	229,143
사 회 복지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053,119	1,153,228	100,109	1,053,119	1,153,228	100,109
	노인복지 기 금	828,860	1,096,159	267,299	828,860	1,096,159	267,299
건설과	재해대책 기 금	571,784	627,054	55,270	571,784	627,054	55,270
	재난관리 기 금	169,857	233,600	63,743	169,857	233,600	63,743
농업기술 센 과	농업전문인력 육 성 기 금	71,492	76,628	5,136	71,492	76,628	5,136

1. 체육진흥기금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 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 계			
계	800,000	336,883	141,858	1,278,741	170,774	1,107,967	
2001년도	200,000	82,071	-	282,071	54,000	228,071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및시비출연이 전체육회자체 기금
2000년도	100,000	65,177	-	165,177	52,928	112,249	
1999년도	100,000	59,898	1,847	161,745	41,364	120,381	
1998년도	-	56,858	74,487	131,345	22,482	108,863	
1997년도	200,000	34,651	62,646	297,297	-	297,297	※경상사업비 체육회사무국 운영비지원
1996년도	100,000	27,051	-	127,051	-	127,051	
1995년도	100,000	11,177	2,878	114,055	-	114,055	

□ 검토사항

○ 동 기금은 '95년도부터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것임.

○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도까지 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6억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당초 목표한 1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자수입등 기타수입을 합하여 총 조성액은 879,896천원임)

○ 2001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시비출연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매년 6천여만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중 5천여만원만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만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용도 활용없이 이월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에 부적절한 것임.

2. 파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정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 계			
계	1,021,647	333,681	-	1,355,328	279,100	1,076,228	※ 정상사업비 중 · 고등학생 장학금및학자 금
2001년도	100,000	68,109	-	168,109	77,000	91,109	
2000년도	100,000	73,047	-	173,047	68,000	105,047	
1999년도	200,000	71,144	-	271,144	74,100	197,044	
1998년도	221,647	63,034	-	284,681	41,800	242,881	
1997년도	300,000	58,347	-	358,347	18,200	340,147	
1996년도	100,000	-	-	100,000	-	100,000	

□ 검토사항

- 동 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도모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의욕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96년부터 2001년까지 10억원을 적립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음.

-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연2회 13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3. 노인복지 기금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정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 계			
계	1,000,000	116,006	-	1,116,006	19,847	1,096,159	
2001년도	200,000	87,146	-	287,146	-	287,146	
2000년도	300,000	2,350	-	302,350	19,847	282,503	
1999년도	100,000	595	-	100,595	-	100,595	
1998년도	-	25,152	-	25,152	-	25,152	
1997년도	200,000	763	-	200,763	-	200,763	
1996년도	200,000	-	-	200,000	-	200,000	

□ 검토사항

- 동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노인복지 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적립하여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금까지 시 출연금은 8억원이며 이자수입등을 합하여 기금조성액은 809,013천원임.

-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야 함에도 2001년도 사업계획의 지출계획이 없슴은 부적절하
다고 판단됨.

4. 재해대책 기금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순조성액 (A-B)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 계	정상사업비	자본적지출	소 계	
계	1,071,768	16,608	3,224,652	4,313,118	3,551,209	263,617	3,814,826	498,292
2001년도	254,974	1,275	-	256,249	78,762	50,000	128,762	127,487
2000년도	443,665	3,398	36,320	483,383	193,972	7,007	200,979	282,404
1999년도	116,962	2,598	2,110,342	2,229,902	2,169,956	24,830	2,194,786	35,116
1998년도	90,000	9,275	1,077,990	1,177,265	1,108,519	181,780	1,290,299	△113,034
1997년도	166,167	152	-	166,319	-	-	-	166,319

□ 검토사항

- 동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기금적립)에 근거하여 재해
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을 위하여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
립하는 것으로 2001년도에 254,974천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운
용에 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등) ①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 기금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 계			
계	226,578	7,022	-	233,600	-	233,600	
2001년도	63,743	-	-	63,743	-	63,743	
2000년도	86,242	5,061	-	91,303	-	91,303	
1999년도	56,593	1,961	-	58,554	-	58,554	
1998년도	20,000	-	-	20,000	-	20,000	

☐ 검토사항

- 동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등 정비를 위하여 '99년도부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평균액의 1000분의 2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2001년에 63,743천원을 출연

하여 순 조성액은 233,600천원으로 운용에 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재난관리법

제56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7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등) ①재난관리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 계			
계	-	5,136	71,492	76,628	3,000	73,628	
2001년도	-	5,136	-	5,136	3,000	2,136	
2000년도	-	-	71,492	71,492	-	71,492	

□ 검토사항

- 2001년도부터 조성되는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순 조성액은 71,49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또한, 지난 제47회 임시회시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고도 2001년도 예산에 반영치 않은 것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